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 개요

가. 사 업 명 : 2027년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(위생관리) 유지관리

나. 소요예산 : 515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다. 사업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법적근거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4항제3호

>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>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>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>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> **3. 긴급한 행사**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**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**
>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 (위생관리) 및 수산물 안전정보서비스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함
- 본 용역의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추진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